

〈잉여금 배당 규약〉

거거덩협동조합 총회 승인 (2024 년 3 월 26 일)

제 1 조(목적)

이 규약은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조합의 배당에 관하여는 다른 규약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입출자금”이라 함은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한 출자금을 말한다.
2. “이용실적”이라 함은 조합 발전과 수익 창출에 기여한 정도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여도는 조합 유형, 조합원 유형,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4 조(배당의 종류)

조합의 배당의 종류 및 배당률은 각 호와 같다.

1. 납입출자금 배당 : 납입출자금의 100 분의 10 을 초과 할 수 없다.
2. 이용실적 배당 : 전체 배당액의 100 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 5 조(배당기준일)

잉여금배당 기준일은 당해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 6 조(배당액의 결정기준)

-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한다.
- ② 협동조합이 제 1 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 ③ 제 2 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 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배당의 순서는 이용실적배당, 납입출자금배당 순으로 지급한다.
- ⑤ 제 4 항에 따라 배당을 하고도 남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제 7 조(배당방법)

- ① 배당은 현금배당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확정된 배당금은 확정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조합원이 제출한 개인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조합원이 요청할 경우 본인의 통장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 ③ 배당이 확정되었으나 조합원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출자금으로 증자하는 회전출자도 가능하다.

제 8 조(배당대상자)

당해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배당 받을 수 있는 자는 사업연도 말의 출자자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으로 한다.

제 9 조(출자금배당 산출방법)

- ① 조합원 개인이 납부한 출자좌수를 전체 총출자좌수로 나누어 조합원별 납입출자비율을 계산한다.
- ② 납입출자금배당으로 가능한 금액에 조합원 개인의 납입출자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 10 조(이용실적배당 산출방법)

- ① 이용실적배당은 조합에 대한 기여도 및 사업의 참여도를 정량화한 것으로 배당의 기준이 된다.
- ② 이용실적을 부여하는 원칙은 평등성, 형평성,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다.
평등성에 따라 임원 여부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점수가 누적된다.
형평성에 따라 참여 횟수에 따른 차등화된 점수가 부여된다.
책임성에 따라 맡은 바 임무를 완수했을 때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이용실적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에 정한 주요사업
 2. 정관에 정한 필수사업
 3. 주요사업 및 필수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타사업
- ④ 이용실적(기여도)에 따른 계산은 당해연도말에 합산하여 조합원에게 개별 공지한다.
- ⑤ 조합은 필요시 조합원에게 이용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여도 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 11 조(배당금의 지급)

배당금의 지급은 총회 의결 후, 각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제 12 조(배당금 지급의무 소멸)

- ① 배당금 지급개시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조합의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수령하지 않은 배당금은 조합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

제 13 조(배당금의 상계)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할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 14 조(기타 잉여금 배당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잉여금 배당에 관한 절차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약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총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이용실적 배당 기본틀>

거거당협동조합 총회 승인 (2024 년 8 월 27 일)

1. 오피스아워
 - 출석

2. 외주용역 프로젝트
 - 수주
 - 일손참여
 - 출석참여

3. 자체기획 프로그램
 - 기획
 - 일손참여
 - 출석참여

4. 인프라 네트워크
 - 이용
 - 제공

5. 음악활동
 - 생음악공연
 - 디지털콘텐츠

